

현행	변경
<p>제 11 조(신탁계약기간)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. 단, 신탁 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65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7.90</p> <p>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5</p>	<p>제 11 조(신탁계약기간)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단, 신탁 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종전과 동일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3.65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90</p> <p>3.~ 4. (종전과 동일)</p>